

市學生體育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가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체육교사연수, 체육특기학생훈련”을 “체육교사연수 및 체육특기학생훈련지원”으로, “학생체육관(이하 “학생체육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함을”을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이하 “학생체육관”이라 한다)을 설치함을”으로 한다.

제2조중 “강동구 잠실1동에”를 “송파구 잠실동 10번지 3호에”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일반에의 개방) 학생체육관은 그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에게 개방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조례로서”를 “조례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임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조의 본문중 “이 조례”앞에 “학생체육관의 적제와”를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서울特別市教育監所管體育施設使用料徵收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委員長 李喆鎬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教育監所管體育施設使用料徵收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教育廳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教育體育局長 尹榮烈 社會教育體育局長입니다.

니다.

서울特別市教育監所管體育施設使用料徵收條例案制定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制定事由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教育監 所管의 體育施設中 室內水泳場, 體育館 등의 施設을 地域住民에게 開放하여 使用토록 함으로써 地域住民에게 心身鍛鍊 및 餘暇善用의 場을 提供하여 教育用 體育施設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며, 또한 施設使用에 따른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主要骨子를 말씀드리면, 使用料 徵收 對象 體育施設의 範圍를 서울特別市學生體育館設置條例에 의한 學生體育館과 室內水泳場, 體育館 등의 體育施設로서 教育監이 指定하는 施設로 하는 것이며, 使用許可 節次 등에 관한 事項을 規定하는 것입니다. 또 使用料를 專用 使用料, 練習使用料, 中繼使用料, 商業使用料, 附屬施設使用料 및 入場料로 區分 徵收하도록 하는 것이며, 使用料의 減免, 返還 등에 관한 事項을 規定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條例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教育規則으로 定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 이 條例 施行과 동시에 서울特別市學生體育館使用料徵收條例는 이를 廢止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制定根據는 地方自治法 第15條, 第127條, 第130條를 根據로 두고 있습니다.

制定條例案에 대한 具體적인 事項은 別첨 유인물을 參考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長虎 서울特別市教育監所管體育施設使用料徵收條例案에 대하여 檢討報告드리겠습니다.

(報 告)

1. 제정경위

본 조례(안)은 1995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5월 1일 소관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

<p>2. 제정이유</p> <p>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의 체육시설중 실내수영장·체육관 등의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심신단련 및 여가선용의 장을 제공하여 교육용 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며, 또한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p> <p>3. 주요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료 징수대상 체육시설의 범위를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설치조례에 의한 학생체육관과 실내수영장,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로서 교육감이 지칭하는 시설로 함(안 제2조) ○ 사용허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사용료를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증계사용료, 상업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및 입장료로 구분 징수하도록 함(안 제5조) ○ 사용료의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 9조) ○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3조) ○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함.(안 부칙 제2항) <p>4. 근거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제15조(조례), 제127조(사용료) 및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p>5. 검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례(안)은 전문 13조 부칙 3조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바 ○ 본 조례(안)은 제정배경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체육시설인 실내수영장 5개소와 체육관 69개소를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 교육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써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적합한 조치라고 생각됩니 	<p>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가 1990년 1월 20일 개정 공포된 이래 체육관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현실성이 부족하여 조례제정을 통하여 이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p>○ 본 조례(안)은 각조를 검토한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체육시설은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설치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과 실내수영장, 체육관 등의 시설로서 교육감이 지칭하는 시설로 하였는바, 실내수영장,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의 설치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학교체육시설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사료됨.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체육시설의 경우 학교시설 설비기준령 제10조에 의거 학교시설중 체육관 및 수영장은 권장시설로서 학교에 설치할 수 있으며, 기타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7조에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선언적 규정으로 되어 있어, 설치근거는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 제3조제1항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는바, 당해 시설관리책임자의 범위가 당해 시설의 장인지 아니면 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실무자인지 불분명하다고 사료되며, • 동조 제4항에서 학생체육관 및 실내수영장의 경우 상시사용자에 대하여 회원권을 발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상시사용자의 개념이 1주일이상 사용자인지 1개월이상 사용자인지 모호하다고 사료됨. • 제5조제1항 별표1 내지 별표6의 징수
---	---

금액을 보면, 학생체육관의 사용료는 규모면에서 서울특별시 체육관리사업소 산하의 장충체육관과 비슷하여 그 요금을 적용한 것은 적당하다고 사료되나, 현행 학생체육관의 사용료와 비교하면 전용사용료 23% 내지 26%, 연습사용료 25%, 입장료 33%, 중계방송료 240% 내지 320%, 부양광고물 100%, 부착광고물 14% 내지 50%의 인상결과를 가져와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서비스요금의 경우 10%이내에서 행정지도할 것)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으나, 1990년 1월 20일 이후 인상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적정하다고 사료됨.

• 제5조제1항 별표1 내지 별표2에서 학생체육관 이외의 체육관과 실내수영장의 요금을 결정하였는바, 실내수영장의 전용사용료는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산하 잠실체육관 요금의 50% 수준인 350,000원으로, 연습사용료는 잠실체육관 요금수준인 1,800원으로 결정하였고, 실내체육관의 요금수준은 전용사용료의 경우 실내체육관의 규모에 따라 660㎡이상인 경우는 24,000원, 660㎡이하인 경우는 18,000원, 연습사용료는 평일 2시간 기준으로 1,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내에서 이용료를 받도록 하였으므로 이 요금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내인가 하는 점을 판단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또한 실내체육관의 경우 체육행사 이외에도 전용사용료를 규정하였는 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8조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제6조2항에서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람수입 총액의 2할을 사용료로 징수하되 그 금액이 제5

조의 전용사용료보다 적게 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제5조에서는 전용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제6조에서는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료는 전용사용료와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모두 징수하는 것인지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전용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사료됨.

• 기타 본 조례(안) 제3조 내지 제13조는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 및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를 준용하되, 학교체육시설에 관련된 조항들을 삽입하여 제정되었다고 사료됨.

○ 따라서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실내체육관과 수영장의 설치근거가 불분명하고, 이들 시설의 학교시설이라 할지라도 이용요금을 받을 경우 그 요금의 적정수준여부, 학생체육관의 요금 인상문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해서 먼저 質疑하실 委員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蘇中天委員, 말씀해 주세요.

○蘇中天委員 蘇中天委員입니다.

서울特別市教育監所管體育施設使用料徵收條例案에 대해서 檢討意見を 들어본 結果, 우선 크게 말씀을 드리면, 學校施設을 使用料를 꼭 받아야 되는 理由가 무엇인지 잘 납득이 안 가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案 第2條에서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는 體育施設은 서울特別市學生體育館設置條例에 의한 서울特別市學生體育館과 室內水泳場, 體育館 등의 施設로서 教育監이 指定하는 施設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室內水泳場, 體育館 등의 施設의 設置根據가 명확하